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07. 13.

발의의원 : 김재우·이영애
전경원·류종우
하병문·하중환
권기훈 의원(7인)

1. 제안이유

- 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 나. 문화예술, 축제, 관광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을 통한 분야별 연계 강화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분야별 전문성은 최대한 살려 운영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재단법인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목적(조례안 제1조)

-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사업(조례안 제4조)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시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문화예술인의 복지 지원,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사업,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마케팅 사업,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관광시설의 관리·운영, 대구광역시 시립 예술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라. 임원(조례안 제6조)

-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마.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3조)

-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구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바. 부칙(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 (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등 다른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등(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진흥원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3.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등

5. 오페라축제 및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 사업
6.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
7. 관광여건 개선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
8.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
9. 지역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
1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1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구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1. 국가·시 및 구·군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시 및 구·군의 보조금
3. 특정 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영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수행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관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구입 계획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소장품의 구입 등) ① 진흥원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 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 심의 절차, 소장품의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예술단의 운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시 및 구·군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구·군에서 부담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위탁, 대부, 사용허가 및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23조(공연·전시시설의 우선 임대) 시장은 진흥원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 진흥원의 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진흥원은 다음 각 호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는 비공개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한다.

1. 정관
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의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부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위탁계약 효력발생일부터, 같은 조 제6호는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양수도계약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4.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5.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6.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 오페라 하우스,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의 모든 재산은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문화재단” 을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시설 사용료 등(제24조 관련)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행사	공연	
공 연 장	팔공홀	오전	211,000	158,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다만, 전시실은 제외)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30%로 함 4) 공연준비, 철수 등을 위해 23시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가) 전시실은 1시간 초과마다 1㎡당 30%를 가산함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오후	264,000	211,000	
		야간	330,000	264,000	
	비슬홀	오전	105,000	66,000	
		오후	132,000	79,000	
		야간	158,000	105,000	
달구벌홀		1회	165,000		
전 시 실		1일 1㎡당	310		
기 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주: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9:00 ~ 22:00로 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설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팔 공 홀	무대 조명	음향반사판 (설치)	1회	105,000	·공연연습 사용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음향반사판 (미설치)	1회	158,000	·공연연습 사용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드라이아이스기	1대/1회	27,000	·드라이아이스 사용자 준비	
		포그머신	1대/1회	27,000		
		핀스포트 (2Kw)	1대/1회	26,000		
		Par64 Light(1kw)	1대/1회	2,600		
		Par46 Light(250W)	8대(1조)/1회	5,000		
		Moving light	1200W	1대/1일	30,000	·비슬홀 사용 시 동일 사용료 적용
			800W	1대/1일	20,000	
	LED Moving light	1대/1일	15,000	·비슬홀 사용 시 동일 사용료 적용		
	무대 음향	기본	1회	30,000	·공연연습 사용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유선마이크	1개/1회	5,000		
		무선마이크	1채널/1회	22,000		
		오디오채널	1채널/1회	5,000		
		메인 프로젝터	1일	100,000	·노트북 대관(사용)자 준비	
		자막용 프로젝터	1일	70,000	·노트북 대관(사용)자 준비	
		리어 프로젝터	1일	150,000	·노트북 대관(사용)자 준비	
		녹음, 녹화	1회	50,000		
	무대 기계 장치	오케스트라 리프트	1회	39,000		
		승강무대	1회	39,000		
		댄스플로워	1일	100,000		
		보 면 대	1개/1일	1,000		
		덧마루(기본 33㎡)	1일	33,000	·추가 33㎡당 33,000원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덧마루	1~3단	1일	100,000	
			4~5단	1일	150,000	
			6단이상	1일	200,000	
		음향반사판	1일	88,000		
		상들리에	1식/1회	50,000		
악기	그랜드피아노	1대/1회	77,000	·공연연습 사용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그랜드피아노 조율 별도		
	팀파니	1대/1회	40,000			
	베이스드럼	1대/1회	20,000			
	세트드럼	1대/1회	20,000			
	신디사이저	1대/1회	20,000			
냉난방	냉방	1회	231,000			
	난방	1회	264,000			
기타	연습실(138㎡)	1회	50,000	·비슬홀 사용 시 동일 사용료 적용		
		1일	150,000			

(단위 : 원)

구분	설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비 슬 홀	무대 조명	기본	1회	52,000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기본시설에 한함	
		드라이아이스기	1대/1회	27,000	·사용자 준비	
		포그머신	1대/1회	27,000		
		핀스포트 (2Kw)	1대/1회	26,000		
		Par64 Light(1kw)	1대/1회	2,600		
		Par46 Light(250W)	8대/ (1조)1회	5,000		
	무대 음향	기본	1회	20,000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유선마이크	1개/1회	5,000		
		무선마이크	1채널/1회	22,000		
		오디오채널	1채널/1회	5,000		
		메인프로젝터	1회	70,000	·노트북 대관(사용)자 준비	
		자막용 PDP	1회	50,000	·노트북 대관(사용)자 준비	
		녹음, 녹화	1회	50,000		
	무대 기계 장치	보면대	1개/1일	1,000		
		덧마루	1일	33,000	·기본(33m ² 이내)	
		댄스플로어	1일	70,000		
	악기	그랜드피아노	1대/1회	55,000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조율 별도	
	냉난방	냉방	1회	187,000		
		난방	1회	88,000		
	달 구 벌 홀	영상	프로젝터	1회	33,000	·노트북 대관(사용)자 준비
		음향	녹음	1채널/1회	11,000	
무선마이크			1회	22,000		
회의용 마이크			1개/1회	11,000		
냉난방		냉방	1회	165,000		
		난방	1회	121,000		

3. 사용료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
-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경감

〈코오롱 야외음악당 대관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행사	공연	
대무대	오전	88,000	66,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있을 경우 해당 기준사용료의 30%로 함
	오후	132,000	99,000	
	야간	220,000	165,000	
소무대	오전	66,000	55,000	4) 사용허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 준비, 철수 등을 위해 23시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대무대는 시간당 60,000원, 소무대는 시간당 40,000원으로 함(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오후	99,000	66,000	
	야간	165,000	110,000	

※ 주: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분 장 실	1회	22,000	1) 공연 연습을 위한 피아노.조명 및 음향 사용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함 3) 대관공연 시 연습실을 사용할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연 습 실	1회	44,000	
피 아 노	1회	55,000	
조 명	1회	110,000	
음 향	1회	88,000	
핀마이크	1회	27,000	
스모그기	1회	27,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7,000	

※ 주: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3. 그 밖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영화상영(비디오포함)	1회	66,000	
중계방송	T V	44,000	
	라디오	27,000	

※ 주: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4. 사용료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
-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경감

〈방짜유기 박물관 대관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비 고
기획전시실	1회	14,000	1)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가) 1시간 초과마다 5,000원을 가산함 (30분 이상은 1시간 으로 산정)
기 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주: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한다.
2. 1일은 9:00~18:00로 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냉방	기획전시실	1회	6,000	
난방	기획전시실	1회	5,000	
기 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주: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한다.
2. 1일은 9:00~18:00로 한다.

3. 사용료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
-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경감

〈대구근대 역사관 대관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비 고
기획전시실	1회	14,000	1)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가) 1시간 초과마다 5,000원을 가산함(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문화강좌실	1회	10,000	
기 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주: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한다.
2. 1일은 9:00~18:00로 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전시실 및 강좌실	음향·영사	무선마이크	1채널/1회	11,000
		유선마이크	1회	6,000
		프로젝트	1회	17,000
	전시실	냉방	1회	6,000
		난방	1회	5,000
	강좌실	냉방	1회	4,000
		난방	1회	3,000

- ※ 주: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한다.
2. 1일은 9:00~18:00로 한다.

3. 사용료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
-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경감

〈대구미술관 대관료〉

구분 및 용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비 고
전시실	1일	m ²	330원	·대관시간 중 일부 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목적홀	1일	m ²	330원	
냉·난방시설	대관시설 사용료의 20%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 단위 (8시간/1일)로 산정한다.
방송영상장비	대관시설 사용료의 10%			

1. 대관료의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면제
-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할인

〈대구미술관 관람료〉

대 상 자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성 인	1,000원	700원	·25세 이상 64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군 인 예술인	700원	500원	·7세 이상 24세 이하 및 대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 ·예술인 패스카드 소지자

※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거나 50명 이상이 관람료를 선불하고 1개월 이내에 관람하는 경우를 말함

1. 관람료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규정된 자
 -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국가 또는 시(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공익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2. 관람료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 (1)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콘서트하우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천원)

시설명	기준	장르	사 용 료		비 고
			준비·녹음	공연	
대공연장 (그랜드홀)	오전	순수예술	600	1,400	1.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장르구분 가. 순수예술: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나. 대중예술: 가요, 팝, 재즈 등 대중음악과 방송, 영화·CF제작 등 행사 3. 공연철수 등 가. 철수는 준비사용료에 준함. 나.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심야철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회 기준사용료 전액을 부과한다. 5. 장기사용 할인-공연사용료 기준 가. 7일 이상 계속 사용 : 10% 감액 나. 14일 이상 계속 사용 : 20% 감액 6.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의 경우 : 공연사용료의 30% 감액 적용함. (다만, 무료공연에 한함.) 7.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가.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나. 해당 분장실 사용 다. 기본조명·음향·무대 기기 및 냉·난방료 8.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중예술	1,000	2,000	
	오후	순수예술	600	1,400	
		대중예술	1,000	2,000	
	야간	순수예술	600	1,400	
		대중예술	1,000	2,000	
소공연장 (챔버홀)	오전	순수예술	200	400	
		대중예술	250	500	
	오후	순수예술	200	400	
		대중예술	250	500	
	야간	순수예술	200	400	
		대중예술	250	500	

※ 주: 부가가치세 별도, 공연기간 중 공연준비 사용시 : 준비사용료 부과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대·소공연장			비 고	
	품 명	단위	사용료		
악 기	스타인웨이 대형 피아노	1대/1일	100	조율비 별도 (전문조율사만 조율 가능)	
	대북	1대/1일	30		
조 명	Follow Pin Spot 2Kw	1대/1일	30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음 향	녹음(CD)	1회	50	확성공연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녹화	1회	60		
	빔프로젝터(그랜드홀)	1회	100		
	빔프로젝터(챔버홀)	1회	50		
	무선마이크	1개/1회	20		
	유선마이크(콘덴서)	1개/1회	20		
	유선마이크(일반)	1개/1회	10		
	유선마이크(1~2개 설치 및 운용)	1회	100		
	유선마이크(3~5개 설치 및 운용)	1회	200		
	유선마이크(6개이상 설치 및 운용)	1회	300		
	스피커	1회	50		
무 대 장 치	덧마루(33㎡당)	1일	30		
	오케스트라·합창 1단/2단	1일	150		
	오케스트라·합창 3단	1일	200		
	오케스트라·합창 4단	1일	300		
	오케스트라·합창 5단	1일	400		
	보면대	1개/1회	1		
기타	외부 녹음·녹화 중계	TV	1회	500	
		라디오	1회	400	
		인터넷	1회	300	회선 설치 별도
	리셉션	1회	200	공연 후 1시간 이내	

※ 주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의미한다.

2. 별도 운영인력 및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3. 사용료의 감면

- ① 국가나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 ② 국가나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공연대관

(단위 : 원)

구 분	대관료(1회)
무 대	1,600,000

- 1)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까지를 말함
- 2) 대관료는 공연회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 4)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료에 준함
- 5) 심야공연(22:00이후)은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 할증
- 6) 공연대관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 (가) 무대 및 관객석
 - (나) 분장실 대관(9실 이내) : 공연기간 및 2일 이내의 공연준비기간
 - (다) 안전관리인력(8시간 근무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무대감독	조 명	음 향	기 계
공 연	4	1	1	1	1
설 치	4	1	1	1	1

※ 추가로 소요되는 안전관리인력은 대관자가 부담

- (라) 하우스매니저와 안내원 등 객석 관리인원
- (마) 기본 조명기기
- (바) 기본 음향기기
- (사) 기본 기계장치
- (아) 공연 중 냉난방
- (자) 출연자 휴게실 등 공용시설 및 공간
- (차)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 (카) 조명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공연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준비함

나. 공연준비 대관

(단위 : 원)

구 분	오 전 (9시-12시)	오 후 (1시-5시)	야 간 (6시-10시)	심 야 (3시간기준)
무 대	800,000	800,000	1,120,000	2,400,000

- 1) 공연준비기간과 공연기간 구분 없이 공연준비를 위한 대관일 경우 공연기간 중 이라도 준비대관료에 준함
- 2) 철야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관함
- 3) 준비대관 시 냉난방비 산정 및 부과

다. 철수대관

(단위 : 원)

구 분	오 전 (9시-12시)	오 후 (1시-5시)	야 간 (6시-10시)	심 야 (3시간기준)
무 대	800,000	800,000	1,120,000	2,400,000

- 1) 철야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관함
- 2)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 3) 철수대관 시 냉난방비 산정 및 부과 <신설 2016.11.28>

라. 연습실대관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1회 3시간 기준)
대연습실(68평)	200,000
중연습실(52평)	150,000

- 1) 대관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 (가) 공용설비 및 공간
 - (나) 해당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본시설
 - (다)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의자
 - (라) 청소, 난방 등 시설관리 유지
 - (마)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마. 오페라하우스 별관 대관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1회 3시간 기준)
다목적연습실(57평)	180,000
강의실	100,000
소공연장	준비대관 100,000
	공연대관 300,000 ※ 영상스트리밍 사용료(별도) 200,000
다목적 홀	1층(37평) 200,000
	2층(18평) 100,000
	※1일(09:00~18:00) 기준

1) 대관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 (가) 공용설비 및 공간
- (나) 해당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본시설
- (다)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의자, 음향시설 등
- (라) 청소, 난방 등 시설관리 유지
- (마) 소공연장 대관일 경우 공연장관리 인력(2명)
- (바)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2) 기타사항

- (가) 소공연장 대관일 경우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대관자부담
- (나) 강의나 공연, 스트리밍에 필요한 소모품등은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준비
- (다) 공연스트리밍 대관료에는 스트리밍 기본장비 및 운영인력 비용이 포함

바. 기타대관(방송,영화,녹음,녹화,CF제작을 위한 대관)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1회 3시간 기준)
무 대	1,600,000
분 장 실	100,000

- 1) 심야대관(22:00이후)시에는 무대대관료의 50퍼센트 할증
- 2) 관객석 또는 로비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대관(무대대관)료의 50퍼센트 할인
-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2. 부대시설 대관료

가. 부속설비 대관료

(단위 : 원)

시 설 명		대관료	비 고	
악 기	피아노	스타인웨이(대형 : D-274)	100,000	
		빠지올리 F-278	100,000	
		엠티라이트(국산)- 오케스트라 피트용	15,000	
	팀파니(외산) 1조		50,000	1대 1일 기준 (조율비 제외)
	콘트라베이스-5현,4현(외산)		20,000	
	첼발로(외산)		80,000	
	차임벨(외산)		20,000	
	일렉톤-스피크시스템(외산)		60,000	
	실로폰 (외산)		13,000	
	베이스드럼-대북(외산)		10,000	
	잉글리쉬 혼		30,000	
	베이스 클라리넷		30,000	
스네어드럼		10,000		
글로켄슈필		13,000		
무대 장치	덧마루	무료	1작품당 99㎡까지 초과시 : 3.3 m ² 당 20,000원	
	댄스플로어	100,000	1작품 기준 소모품 : 대관자 부담	
	의자, 보면대, 보면대조명등	30,000	1일 기준 (20SET 이하 무료)	
냉난방	냉방비	200,000	1회 3시간 기준	
	난방비	250,000		

(단위 : 원)

시 설 명		대관료	비 고	
조 명 (효 과 용)	FOLLOW PIN SPOTLIGHT	30,000	1회 공연 1대 기준 (소모품, 운영인력 : 대관자부담)	
	FOG MACHINE	20,000		
	HAZER MACHINE	20,000		
	MOVING LIGHT	50,000		
	PAR LIGHT	2,000		
	FRESINEL SPOTLIGHT(5Kw)	5,000		
	ELLIPSOIDAL REFLECT SPOTLIGHT	3,000		
	CONTROLLER	100,000		
음 향	기본설치 (마이크 설치비)	60,000	1일 1대 기준(소모품 및 운영인력 대관자부담)	
	Wireless	30,000		
	모니터스피커	40,000		
	메인스피커시스템	200,000		
	빔프로젝트	20,000 ANSI		150,000
		15,000 ANSI		100,000
	콘솔(야마하디지털)	200,000		
	마이크로폰(다이내믹)	5,000		
마이크로폰(콘덴서)	10,000			

(단위 : 원)

시 설 명		대관료	비 고	
분 장 실		40,000	1인 1실 기준	
기 타	귀 빈 실	100,000	1회당 (오페라하우스 허가 시)	
	비 디 오 촬 영	오페라하우스 기자재	60,000	1회 공연 기준 (오페라하우스 허가 시)
		외부기자재	100,000	1회 공연, 1일 1실 기준 (오페라하우스 콘솔 또는 음향소스를 대관할 경우)
	홍보, 판촉용 부스 설치		100,000	1개소 1일 기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00,000	1개월
			200,000	2주
	1층 메인로비		100,000	1일 3시간 기준 (리셉션 시)
	현수막 설치	외벽(3m*10m)	20,000	1일 기준
		로비(4.5m*6m)	20,000	
		트러스1set	10,000	
자막시스템		100,000	1일 기준 (입력 및 오퍼레이팅 인력 : 대관자 부담)	

나. 서비스 부분 인력지원비 세부내용

(단위 : 원)

서비스 지원명		대 관 료	비 고
무 대 감 독		1,200,000	.공연준비 단계부터 공연철수 때까지 투입 .1작품 당 공연 10일 이상은 회당 30,000원 추가
조 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뮤지컬	1,200,000	.공연 준비단계에서 첫 공연 시 까지 .작품 당
	오페라/무용/연극/발레	1,000,000	
	기 타	700,000	

다. 무대세트 대관

구분	단위	사용료 (30일 이하)	비고
무대세트	1세트	제작단가의 10% (제작3년 경과 시 7%)	· 30일 초과 대여 시 1일당 대여료 - 제작단가의 0.1% · 운송비 및 수선유지비 별도 · 대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대여자 부담

* 무대세트 제작단가표 산정 및 보관

라. 대·소도구 대관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대도구	개(EA)	40,000원	· 반출·반입 포함 7일 기준 · 7일 초과 대여 시 1일당 사용료 10% 가산 · 대여에 필요한 제반비용(운송비, 수선유지비 등)은 대여자 부담
소도구		20,000원	

* 대도구 기준 : 무게가 20kg 초과하거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마. 의상·소품 대관

구분	단위	사용료 (10일/20일이하)	비고
의상	벌	· 제작단가의 10% (제작 3년 경과 시 7%) · 사용기한 10일 이하	· 제작년도 10년 초과 의상 - 20,000원 · 10일 초과 대여 시 1일당 대여료 추가 - 제작년도 10년 미만 : 제작단가의 1% - 제작년도 10년 초과 : 대여료의 10% · 세탁비 별도 · 파손 시 수선비 별도 · 대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대여자 부담
소품	개(EA)	· 20,000원 · 사용기간 : 20일 이하	· 20일 초과 대여 시 1일당 대여료 추가 - 대여료의 10% · 파손 시 수선비 별도 · 대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대여자 부담

* 의상 및 소품 제작단가표 산정 및 보관

* 신규품목 등 추가된 대여품의 대여료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

3. 대관료 감면

-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은 기본 시설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2)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속하는 지역예술단체인 대관자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교육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대관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